

1. 다음 중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 ②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의 취소
- ③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 ④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납입고지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 ④ [난이도 하]

②번 지문은 생소할 수 있다. 군무원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최신판례이다. 그러나 정답은 매우 중요한 판례이자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고지에 관한 지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중요 판례 위주로 공부할 하여야 하고 최신판례에는 모든 학습이 끝난 뒤에 추가하는 정도로 학습을 하여야 한다.

- ① (x)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x)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5. 2014두46843).
- ③ (x)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 688조의 수입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1. 29.2012두7387).
- ④ (o)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다음 중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유보원칙은 의회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 ②
- ③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④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과 행정유보원칙 모두를 인정하였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중]

행정유보는 법률유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군무원 문제 중 최근 문제풀에 들어온 문제는 판례의 태도를 주로 묻지만 이처럼 전통적 형식의 문제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

- ① (o)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의 내용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의회민주주의는 기본권보장을 위해 탄생한 원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o)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규명령을 통한 규율도 인정한다.
- ④ (x) 행정권에 원칙적으로 법률적 사항을 입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행정유보의 관념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오히려 티비방송수신료에 대해 반드시 의회가 만들어야 한다는 의회유보를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9.5.27, 98헌바70).

3. 다음은 행정법상 시효 및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국회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행정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 이 준용된다.
- ④ 국제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제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효제도는 민법에서 건너온 제도라는 점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을 이용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 계산에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소거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① (o) ③(o)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② (x) 국회의 회기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연금법도 국민이 국가에 대한 급전급부의무로서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가 걸린다.

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o) 국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 내용이다.

4.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하]

행정절차법을 강의할 때 행정지도의 조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 ①(x) 불이익조치금지(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 ②(o) 의견제출권의 인정(동법 제50조)
- ③(o) 다수인에 대한 지도시 공통사항 공표의무(동법 제51조)
- ④(o) 서면교부요구권(동법 제49조 제2항)

5.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②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통제·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하]

통치행위는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C급 내지 D급이지만 군무원시험에서

는 특A급이다.

- ①(o)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법심사를 인정한다.
- ②(o) 판례는,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③(x)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국민의 선거 등 정치적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④(o) 판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6.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 ② 주민투표의 실시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속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중]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순수 각론 문제에 해당한다.

- ① (o) 국민투표권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 ② (o)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는 규정문언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으며...(헌재 1994.12.29, 94헌마201).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③ (o)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는 일정사항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그러한 요구권이 없다.

④(x)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7. 다음 중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 ② 조세부과처분
- ③ 학교법인 임원선임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 ④ 재임용거부취지의 임용기간만료통지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 ① 강학상 특허
- ② 강학상 하명
- ③ 강학상 인가
- ④ 강학상 통지

8.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한다.
- ②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상]

최신판례와 조문을 함께 출제한 어려운 문제이다.

- ① (o)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 한다(대판 2018.1.24. 2015도16508).
- ② (o)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8.17. 2014다235080)
- ③ (o)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6.15. 2013두2945).

④ (x)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국민 무은 A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학교 체육특기생들의 3년간 출석 및 성적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A대학교 총장은 제3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무은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무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③ 체육특기생들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A 대학교 총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도 포함된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상]

- ① (o) 정보공개청구권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로서 무은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② (o) 거부처분에 관해서는 신청권이 있는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는데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
- ③ (x)[제3자 관련정보라는 사정은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9.25. 2008두8680).

④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에 국한되므로 사망한 사람이나 법인의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 ① (o)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 ③ (x)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할 필요가 없다(헌재2005.7.21. 2003헌마282)

11.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 ②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③ 행정행위의 취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와 관련된 기본사항 문제이다.

- ① (x)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철회는 후발적 사정 변경으로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 ③ (x) 철회에 대한 설명이다.

12. 다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은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때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 ②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중]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과 달리 과징금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차 강조한 바 있다.

- ① (x)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 ② (o)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o)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03.7.24. 2001헌가25)

④(o) 판례는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있어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 2004.2.26. 2002헌바26)

13. 다음은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 ②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요판례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① (o)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므로 공권력행위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0.6.1. 99헌마538).
- ② (x)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7.11.15. 2007두10198).
- ③ (o)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개념에 해당한다.

14. 다음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처분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졌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이 가능하므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중]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기 문제이다.

① (o) 행정청은 재결의 구속력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o)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x) 직접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강제의 한계를 느껴 입법자들이 입법한 것이 간접강제이다.

④(ο)

행정심판법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제청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15.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자치법규는 15일 이상으로 한다.
-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중] 입법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다. 모의고사에도 정답지문으로 얼마 전에 출제된 바 있다.

① (x) 20일이 아니라 40일이고 15일이 아니라 20일이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ο)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의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 제2항)
- ③ (ο) 행정절차법 제42조 제3항
- ④ (ο) 행정절차법 제42조 제5항 및 제6항

16. 불법 시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해산명령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지도
- ② 하명
- ③ 통지
- ④ 허가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하] 강학상 하명에 해당한다.

17.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 ②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적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 ③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등을 취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④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하]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① (ο) 사정재결의 의의에 해당한다.
- ② (x)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ο) 사정판결의 의의에 해당한다.
- ④ (ο)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을 위해서는 공공복리와 개인의 사의보호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18. 다음 중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 ①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의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②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불허가를 결정하였다더라도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채광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의 제된 경우 당연히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중]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절차집중이 인정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항상 강조한 바 있다.

- ① (ο) 인허가 의제에서는 절차집중이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x) 실제집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 ④ (x)[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인허가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의제되는 법률의 규정이 모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의 제된 경우에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6.13. 2012다87010).

19. 다음 중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법상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
- ② 별정우체국장의 지정
- ③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과 개인이 체결하는 계약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사이에 체결되는 공해방지협정 또는 환경보전협정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하] 협의취득, 환매권 행사, 환매금액 증감은 민사관계라고 항상 강조한 바 있다.

20.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 ① 대한민국
- ② 강원도의회
-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하]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구별은 많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던 부분이다.

- ① (ο)국가로서 행정주체
- ② (x)의결기관
- ③ (ο)공공단체 중 공공사단(조합)
- ④ (ο)공공단체 중 영조물 법인

21.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피고격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된다.
- ② 공공단체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다.
- ③ 대한상공회의소, 국립의료원, 정신문화연구원 등은 공공단체로서 행정 객체의 지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하] 기본기에 해당한다.

① (o) 행정청은 절대로 행정주체가 아니다. 항상 구별해서 설명했던 부분이다.

22.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 ②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견제출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 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중] 행정절차법에서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조문 문제와 기본판례가 출제되었

다.

- ① (o) 행정청은 침익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② (x)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 의견제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o)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 ④ (o)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 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4.5.28, 2004두 1254).

23. 다음 중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건설촉진법상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정 시설 등을 훼손하여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를 둘러 주민의 출입을 막았는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위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②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에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장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 ③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 ④ 군청 내 일반 공무원들의 휴게실 겸 회의실 등의 용도로도 함께 사용되어 오던 중, 위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법의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자, 수차에 걸친 자진폐쇄 요청하였 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문제 분석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중] 소거법으로 풀기 좋은 문제이다. ①~③ 확실히 틀렸으므로 폐쇄 조치가 대체적 작위의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풀어야 한다.

① (x)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작위의무를 명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② (x) 대체적 작위의무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 ③ (x) 협의취득은 민사관계이므로 공법적 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없다.
- ④ (o) [폐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으로서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주된 목적이 법의 단체인 전공노의 위 사무실에 대한 사실상 불법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공노의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군 청사의 기능을 회복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전제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 의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합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대판 2011.4.28. 2007도 7514).

24.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 ⊖ )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론으로는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 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 ⊕ )의 형식은 ( ⊙ )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 ⊖ - 입법중심주의
- ⊕ - 위임입법
- ⊙ - 예시적

[문제 분석 및 해설] [난이도 중]

판결요지를 그대로 물어본 문제에 해당한다. 위임입법에 있어서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본에 속한다.

- ⊖ - 의회의 입법 외에도 현행법은 행정입법을 인정한다. 따라서 입법중심주의이다.
- ⊕ -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위임입법 형식을 인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고시형식으로 위임도 가능하다고 본다.

2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고유한 권한사항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주민투표부의권
- ㄴ. 규칙제정권
- ㄷ. 재의요구권
- ㄹ. 청원의 접수 및 수리
- ㅁ. 조례제정권
- ㅂ. 행정감사권
- ㅅ.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ㅇ.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

ㄱ, ㄴ, ㄷ, ㅇ

[문제 분석 및 해설] [난이도 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비교하는 내용으로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개념 자체 확인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반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생소했을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

- ㄱ, (o)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ㄴ.(o)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o)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x)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ㅁ.(x)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ㅂ.(x)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ㅅ.(x)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o)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http://g.daejangbu.com 02-849-7746